

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9
----------	-----

발의 연월일 : 2005년 12월 8일
발 의 자 : 정윤숙 의원의외 7인

□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노사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“실무협의회”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
- 노사정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성실히 이행 의무를 보장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제명 등은 「법령제명 피어쓰기 기준」에 맞도록 정비하고
- 지역 노동현안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무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함.(안 제7조)
- 관계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,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함.(안 제9조)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
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“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”을 “「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7조를 제8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실무협의회) ①협의회의 안건을 검토·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
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.

제9조(성실히행의무) ①관계 행정기관,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·노동단체·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·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①협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『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』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 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 (생 략)</p>	<p>②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·노동단체·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</p> <p>③위원장은 관계 행정기관·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 (수당 등)협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
제19조(지역노사정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지역노사정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6조(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)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3. 공익을 대표하는 자
4.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
5. 당해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지역내 노사정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
2. 지역내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
3.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

④지역노사정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